

1. 개정이유

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한 착수금 사용계획기간 확대(안 제5조)

- 1) 현행은 착수금 사용계획 기간이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, 사용기간에 연계해서 집행규모가 결정되는 노무비, 경비 등의 조기집행에 한계가 있고, 반기마다 착수금 지급을 위한 반복적 행정소요 발생
- 2) 이에 착수금 사용계획 기간을 360일로 확대하여 예산 집행 유연성 확보 및 국민 경제 활성화, 반복적 행정소요 최소화 도모

나.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(안 제6조의2)

- 1)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·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
- 2)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(다만, 현재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유예된 보증에 한함.)하여 중소 조선소의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

다.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관련 일자 명확화(안 제9조)

- 1)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증빙서류 접수 및 확인 기한을 규정한 일자가 토요일

및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

- 2)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 수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
한과 동일하게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을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80일”을 “360일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다(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2년 1월 2일”을 “2024년 1월 2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5일”을 “1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”로, “20일”을 “20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급한도액) ① (생 략)	제5조(지급한도액) ① (현행과 같 음)
②착수금의 지급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 과할 수 없으며,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 시마다 그 청 구일부터 <u>180일</u>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정하여진 사용기 간보다 조기(早期)에 사용한 후 그 사용실적과 추가 착수금 사 용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 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<u>36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) ① 계약담당공무원 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 대자의 경우 협력업체의 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 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	제6조의2(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~ 4. (생략)

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2년 1월 2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(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부터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착수금 수령사실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

2023년 12월 31일-----

-- 있다(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한다).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2024년 1월 2일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) ① -----

----- 15일(토요일 및 공휴

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,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<u>20일</u> 이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·확인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<u>일은 제외한다)</u> ----- ----- ---- <u>20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